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 등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26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07026)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제안배경	4
V. 검토의견	7
1. 항공교통관제 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26호의2 신설)	7
가. 개정안의 내용	7
나. 검토의견	10
다. 국토교통부 의견	12
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안 제34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5조 제7호의2)	13
가. 개정안의 내용	13
나. 검토의견	16
다. 국토교통부 의견	21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심사, 기량심사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안 제37조 의3 신설, 제38조 등)	23
가. 개정안의 내용	23
나. 검토의견	29
다. 국토교통부 의견	33
4. 항공교통관제사 적성검사 신설 등(안 제42조의2 신설 등)	35
가. 개정안의 내용	35
나. 검토의견	40
다. 국토교통부 의견	42
5. 항공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자, 항공지 도를 발간하는 자에 대한 감독(안 제132조)	43
가. 개정안의 내용	43
나. 검토의견	45
다. 국토교통부 의견	48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070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7.
3. 회 부 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업무의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효과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26호의2)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1권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구체화

나.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국제민간항공협약」상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한정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안 제37조의2 및 별표)

라.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 최소 근무경력 등을 포함하는 정기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7조의3)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변경에 대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

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안 제42조의2 및 제135조제5항)

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취소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

아.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집행에 대한 청문 근거 신설(안 제134조제9호)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항공지도를 제공 또는 발간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132조제1항·제2항)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제 지식·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6조제1항 제13호의2·제14호·제15호 및 제16호의2)

카. 관제시설에서 자체 시행하는 심사를 통해 취득한 한정증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IV. 제안배경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9는 자격·면허(license), 인증·증명(certification), 허가(authorization) 등을 규제·감독 당국의 기능으로 명시(부속서 19 3.3.1)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규제당국으로서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 중 하나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 등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는 21세 이상인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전문성을 감안하여 관제업무의 종류, 업무방식 및 관제시설에 따라 그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구분하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도입·운영하도록 하며, 항공교통관제사로 하여금 1개 이상의 한정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를 때 18세 이상이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고, 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한정·업무범위 없이 발급되나, 관제서비스 권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을 명시한 「항공안전법」 제83조¹⁾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5조²⁾에서 개인의 업무 한정(관제기관별)을 취득하도록 하

1) 「항공안전법」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는 등 규제당국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명의 한정이 아닌, 관제기관의 장이 관제서비스의 일환으로 업무한정을 자체발급·관리하는 상황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국내 항공교통관제사와 국제기준 비교 】

구분	지식	관제경험(실무경험)	관제경험(전문교육)	나이	신체검사	자격증명 한정
국내	요구	3개월 (모의장비 인정)	이수 (한정 취득과정 불포함)	18세	3종 요구	해당 없음
ICAO	요구	3개월 (모의장비 인정 불가)	이수 (한정 취득시까지 필요)	21세	3종 요구	1개 이상 필요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제안된 것임.³⁾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제238조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날이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업무의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에 관한 사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 및 항공기탑승훈련 등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국가에 대해 안전평가를 수행하는데, 전체 851개 평가문항 중 100개 문항(11.5%)이 국가(규제당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체계 관련이고, 자격분야 100개 문항 중 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 24개 문항, 관제사 양성훈련기관 관리체계 21개 문항 등이 관제사와 직접 관련되며, 최근 자격분야는 관제사 양성훈련기관에 대한 지적사항(finding)이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다수 식별되는 추세라는 설명임.

이때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관제 업무의 보조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수정하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기존에 갖추고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및
개정안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교 】**

구분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나이	·만 18세 이상	·만 21세 이상
신체검사	·3종 신체검사증명 요구	·3종 신체검사증명 요구
관제경험	·3개월 이상 (모의 실습장비 인정)	·3개월 이상 및 해당 시설 특성에 따른 시간 요건 (모의 실습장비 인정 불가) * 한정 취득 과정에서 축적한 관제 경험시간 합산 가능
관제 훈련	·전문교육기관 이수 또는 관제경험요건 충족 (한정취득 과정 불포함)	·전문교육기관 반드시 이수(한정취득과정 필수)
한정 (rating)	·필요 없음	· <u>1개 이상 반드시 필요</u>

자료 : 국토교통부

V. 검토의견

1. 항공교통관제 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26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정의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하며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는 제외한다. 가. 비행장관제업무: 제35조제7호의 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현행	개정안
	<u>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u> 나. <u>접근관제업무: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u> 다. <u>지역관제업무: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관제구4)(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u> 라. <u>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u>
6. ~ 10의5. (생략)	6. ~ 10의5. (현행과 같음)
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u>공역(空域)</u> 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11. ----- ----- ----- --- <u>공역</u> ----- ----- ----- -----.
12. ~ 26. (생략)	12. ~ 26. (현행과 같음)
<u><신설></u>	<u>26의2.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u>

현행	개정안
27. ~ 34. (생략)	<u>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u> <u>가. 비행장관제탑: 비행장 또는 공항에서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u> <u>나. 접근관제시설: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대상으로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u> <u>다. 지역관제시설: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u> <u>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아닌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u> 27. ~ 3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제4호·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현행	개정안
	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제5항·제6항(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34조제9호(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⁵⁾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항공업무의 일환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고,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율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현행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제도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 따른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국제기준에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4)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5)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관련하여 두 용어의 정의를 규율하면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1(Air Traffic Service, 항공교통업무) 상 Air traffic control service(항공교통관제업무)와 Air traffic control unit(항공교통관제기관)의 정의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각각 다음과 같음.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1 상 용어의 정의 】

구분	원문	번역
항공교통관제업무	Air traffic control service. A service provided for the purpose of: a) preventing collisions: 1) between aircraft, and 2) on the manoeuvring area between aircraft and obstructions; and b) expediting and maintaining an orderly flow of air traffic.	항공교통관제업무. 다음의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a) 충돌 방지 1) 항공기 간 2) 기동지역의 항공기와 장애물 간 b)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
	Aerodrome control service. Air traffic control service for aerodrome traffic.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교통에 제공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Aerodrome traffic. All traffic on the manoeuvring area of an aerodrome and all aircraft flying in the vicinity of an aerodrome.	비행장 교통.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 또는 비행장 주변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
	Approach control service. Air traffic control service for arriving or departing controlled flights.	접근관제업무. 관제를 받는 출발 및 도착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Controlled flight. Any flight which is subject to an air traffic control clearance.	관제를 받는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허가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
	Area control service. Air traffic control service for controlled flights in control areas.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위한 항공교통관제업무 (※ 한글 표현 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역함.)
항공교통	Air traffic control unit. A generic term meaning variously, area control centre, approach control unit or aerodrome control tower.	항공교통관제시설.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또는 비행장관제탑 등을 의미하는 일반화된 용어

구분	원문	번역
관제시설	Aerodrome control tower. A unit established to provide air traffic control service to aerodrome traffic.	비행장관제탑. 비행장 교통을 위하여 항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Approach control unit. A unit established to provide air traffic control service to controlled flights arriving at, or departing from, one or more aerodromes.	접근관제소. 하나 이상의 비행장에 도착 중이거나 출발 중인 관제를 받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Area control centre. A unit established to provide air traffic control service to controlled flights in control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지역관제소. 관할 관제구 내의 관제를 받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등은 현행법 및 개정안에서 해당 용어가 개별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항공교통 관제시설의 종류를 법률에서 별도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국내에 도입·운영하기 위해 관련 용어 정의를 정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동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정의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안 제34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5조제7호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자격증명의 종류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증명의 연령 제한을 새로이 규정하며, 해당 자격증명에 따른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규정하고, 기존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는 것임.

아울러, 기존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 중 일부를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7. (생략) <u><신설></u> 8.·9. (생략)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u> 8.·9. (현행과 같음)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나. (생략)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가.·나.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생략) ③ (생략) <신설>	다. ----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과 업무범위 등) ① 제36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종류, 업무의 수행방식 및 각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증명을 한정한다. 이 경우 한정 및 한정에 따른 업무범위(이하 “한정업무범위”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한정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의 취소 등) ① ----- ----- ----- ----- ----- -----. 제6호의4, 제6호의5-----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

현행	개정안								
<신설> 6의2.·6의3. (생략) 7. ~ 31. (생략) ■ 항공안전법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범위(제36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r> <th>자격</th><th>업무 범위</th></tr> <tr> <td>항공교통관제사</td><td>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td></tr> </table>	자격	업무 범위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u>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한정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u> 6의3. (생략) 6의4.·6의5. (현행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같음) 7. ~ 31. (현행과 같음) ■ 항공안전법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범위(제36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r> <th>자격</th><th>업무 범위</th></tr> <tr> <td>항공교통관제사</td><td>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제2조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의 보조 2. 제2조제5호의2 라목에 따른 업무</td></tr> </tabl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제4호·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제5항·제6항(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34조제9호(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	자격	업무 범위	항공교통관제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제2조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의 보조 2. 제2조제5호의2 라목에 따른 업무
자격	업무 범위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자격	업무 범위								
항공교통관제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제2조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의 보조 2. 제2조제5호의2 라목에 따른 업무								

현행	개정안
	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한정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21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제34조제2항제1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제도가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되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및 그 자격증명의 한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안 제35조제7호의2는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추가하고 있음.

또한, 안 제37조의2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종사자

자격관리, Personnel Licensing)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그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관제시설에 따라 제한하고 한정받은 자격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 상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 】

원문	번역
4.5 Air traffic controller ratings 4.5.1 Categories of air traffic controller ratings. a) aerodrome control rating; b) approach control procedural rating; c) approach control surveillance rating; d) approach precision radar control rating; e) area control procedural rating; and f) area control surveillance rating. (이하 생략)	4.5 항공교통관제사 한정 4.5.1. 한정의 종류 a) 비행장관제업무한정 b) 접근관제업무한정 - 비감시 c) 접근관제업무한정 - 감시 d) 정밀접근레이더 한정 e) 지역관제업무한정 - 비감시 f) 지역관제업무한정 - 감시
4.5.3 Privileges of the holder of the air traffic controller rating(s) 4.5.3.1 Subject to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1.2.5, 1.2.6, 1.2.7.1 and 1.2.9, the privileges of the <u>holder of an air traffic controller licence endorsed with one or more of the undermentioned ratings shall be:</u> a) <i>aerodrome control rating</i>: to provide or to supervise the provision of aerodrome control service for the aerodrome for which the licence holder is rated; b) <i>approach control procedural rating</i>: to provide or to supervise the provision of approach control service for the aerodrome or aerodromes for which the licence holder is rated, within the airspace or portion thereof,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 providing approach control service; c) <i>approach control surveillance rating</i>: to provide and/or supervise the provision of approach control service with the use of	4.5 항공교통관제 한정을 보유한자의 업무권한(업무범위) 4.5.3.1 1.2.5, 1.2.6, 1.2.7.1 및 1.2.9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래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한정이 기재된 항공교통관제사 면허 소지자의 업무권한(업무범위)은 다음과 같다: a) 비행장관제업무한정: 자격증명 소지자가 한정을 부여받은 비행장에 대해 비행장 관제 업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업무 제공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b) 접근관제업무한정 - 비감시 : 자격증명 소지자가 한정을 부여받은 비행장 또는 비행장들에 대해,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업무 제공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접근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할 공역 또는 그 일부에서 이루어진다. c) 접근관제업무한정 - 감시: 자격증명 소지자가 한정을 부여받은 비행장 또는 비행장들에 대해, 해당 기관의 관할

원문	번역
applicable ATS surveillance systems for the aerodrome or aerodromes for which the licence holder is rated, within the airspace or portion thereof,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 providing approach control service; (중략) d) approach precision radar control rating: to provide and/or supervise the provision of precision approach radar service at the aerodrome for which the licence holder is rated; e) area control procedural rating: to provide and/or supervise the provision of area control service within the control area or portion thereof, for which the licence holder is rated; and f) area control surveillance rating: to provide and/or supervise the provision of area control service with the use of an ATS surveillance system, within the control area or portion thereof, for which the licence holder is rated.	공역 또는 그 일부 내에서 적용 가능한 항공교통관제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중략) d) 정밀접근레이더 한정: 자격증명 소지자가 등급을 부여받은 비행장에서 정밀 접근 레이더 업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 제공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e) 지역관제업무한정 - 비감시: 자격증명소지자가 한정을 받은 관제지역 또는 그 일부 내에서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업무 제공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f) 지역관제업무한정 - 감시: 자격증명 소지자가 한정을 받은 관제구역 또는 그 일부 내에서 항공교통관제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업무 제공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료 : 국토교통부

이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관제시설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기술과 지식이 다르므로 적절한 관제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업무를 한정하는 것임. 우리나라도 조종사, 정비사 등에 대해서는 한정 제도를 기 운영 중⁶⁾임.

6) 「항공안전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안 부칙 제2조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⁷⁾.

또한, 안 제34조제2항제1호 다목은 21세 미만인 사람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종사자 자격관리, Personnel Licensing)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연령은 21세 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임.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 상 항공교통관제사 연령제한 】

원문	번역
4.4 Air traffic controller licence 4.4.1 (생략)	4.4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4.4.1 (생략)
4.4.1.1 Age. The applicant shall be <u>not less than 21 years</u> of age.	4.4.1.1 연령.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해당 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가 최초 작성된 1948년부터 정해진 기준으로, 국제기준 상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자국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

7)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운영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는 자(유효한 것으로 발급)와 한정을 취득하고 유지했었던 자(유효하지 않고 정지된 것으로 발급)에 대해서 한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 한다는 설명임.

려할 때 국가 간 통일성이 요구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 상 자격증명 유효성 부여방안 】

원문	번역
1.2.2 Method of rendering a licence valid	1.2.2 자격증명의 유효성 부여 방안
1.2.2.1 When a Contracting State renders valid a licence issued by another Contracting State, as an alternative to the issuance of its own licence, it shall establish validity by suitable authorization to be carried with the former licence accepting it as the equivalent of the latter.	1.2.2.1 한 국가가 다른 ICAO 체약국에서 발행한 자격증명을 자체 자격증명 발급의 대안으로 유효하게 인정하는 경우, 그 국가는 해당 면허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서(authorization)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기존 면허와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46명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았고, 이 중 21세 미만이 4.5%에 해당하는 4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안 부칙 제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중 21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자 (명)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취득자 (전체)	87	81	101	139	83	99	98	131	112	115	1,046
취득자 (21세 미만)	7	8	5	7	1	5	3	4	2	5	47

자료 : 국토교통부

그리고 개정안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 별표에 따르면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보조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는 비행장 내 계류장에 대한 관제업무 등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업무위탁,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법 통과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관제업무·시설의 종류에 따른 한정 및 업무범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기준에 따라 개별 관제시설의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신설에 동의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의 최소 취득 연령이 국제기준에 정하는 만 21세와 동일하게 규정되는 것에 동의함.

또한, 관제업무 종류(한정) 및 관제시설(업무범위)을 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사자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이므로 동의함.

한편, 현행 관제사 자격증명은 국제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나, ①비행장 내 계류장에 대한 관제업무 및 ②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존치가 바람직함.

그리고 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심사, 기량심사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안 제 37조의3 신설, 제38조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교육훈련과정 이수, 일정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심사에 응시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 기량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그 한정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효력이 정지된 자가 기량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그 효력정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 심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도 항공교통관제사와 마찬가지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u>자격증</u>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u><신 설></u>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u>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자격증명의 한정을 변경·추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정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춘 사람일 것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현행	개정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3. 자격증명의 한정업무범위로 정해진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추었을 것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1. ~ 5. (현행과 같음) 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심사----- .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정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

현행	개정안
<u>제38조제4항</u>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신설>	<u>제38조제5항</u>-----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37조의3(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 및 자격증명의 한정 정지 등)</u>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을 포함한 기량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u> ② <u>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량심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량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심사 방식, 기준,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생략) 2. <u>제35조제7호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u> ② ~ ⑦ (생략)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u>-----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의 취소 등)

현행	개정안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u>6의2. · 6의3. (생략)</u> 7. ~ 31. (생략) ② (생략) <u><신설></u>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u>규정</u>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	① ----- ----- ----- ----- ----- ----- ----- 제6호의4, 제6호의5-----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생략)</u> <u>6의3.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기량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량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u> <u>6의4. · 6의5. (현행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같음)</u> 7. ~ 3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3에 따라 자격증명등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 합격하는 경우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u>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수수료 등) ① ----- ----- ----- ----- ----- ----- 제10항----- -----

현행	개정안
에는 그 <u>수탁기관</u>에 내야 한다. 1. ~ 13. (생략) <u><신설></u> 14.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 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생략) <u><신설></u> 17. ~ 39. (생략) ② (생략)	-- 위탁받은 기관-----.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문항공 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관 제 기술 및 업무지식 심사에 응시 하는 자 14. 제38조제4항----- ----- ----- 15. 제38조제5항-----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생략) 17. ~ 3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제4호·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제5항· 제6항(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 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34조제9 호(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안 제38조제3항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하여는 ①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추고, ②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③한정업무 범위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상태에서 관제기술 및 업무지식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음.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종사자 자격관리, Personnel Licensing)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한정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된 교육과정(전문교육과정)을 거치고, 3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과 적합한 수준의 지식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 상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요건 】

원문	번역
4.4 Air traffic controller licence	4.4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4.4.1.2 Knowledge. The applicant shall have demonstrated a level of knowledge appropriate to the holder of an air traffic controller licence.	4.4.1.2 지식 신청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에게 적합한 수준의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
4.4.1.3.1 Experience. The applicant shall have <u>completed an approved training course</u> and demonstrated the required competence, having accomplished <u>not less than three months</u> of satisfactory	4.4.1.3.1 관제경험. 신청자는 승인된 교육 과정(전문교육과정)을 완료하고 요구되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항공교통관제사 OJT 교관의 감독하에 실제

원문	번역
service engaged in the actual control of air traffic under the supervision of an air traffic control (ATC) on-the-job training instructor (OJT). The experience requirements specified for air traffic controller ratings in 4.5 may be credited as part of the experience specified in this paragraph.	항공교통 관제를 수행한 최소 3개월 이상의 만족스러운 근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4.5에 명시된 항공교통관제사 등급에 대한 경력 요건은 본 항목에서 요구하는 경력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개정안 문언 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심사에 합격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다음, 안 제37조의3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기량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Personnel Licensing, 종사자격)에서 자격증명 또는 그 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지자가 역량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기량 심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임.

8) 「항공안전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 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 상 항공교통관제사 역량 요건 】

원문	번역
1.2.5 Validity of licences 1.2.5.1 A Contracting State, having issued a licence, shall ensure that the privileges granted by that licence, or by related ratings, are not exercised unless the holder <u>maintains competency and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ent experience established by that State.</u>	1.2.5 자격증명의 유효성 1.2.5.1 국가는 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 해당 자격증명 또는 한정(rating)으로 부여된 권한이 자격증명 소지자가 해당 국가에서 정한 최근 실무경험을 충족하고 역량요건(숙련도)을 유지하지 않는 한 행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이는 항공 안전 및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적절한 수준의 기량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⁹⁾

다만, 안 제43조제1항제6호의3은 기량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량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량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후속 기량 심사를 통해 기량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

9)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수행실적(최근 6개월 내 관제실무 25시간 이상)과 정기 학과교육 및 비정상·우발 사태 기량훈련 이수(2년 주기) 및 기량점검(4년 주기) 등을 통해 기량을 심사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10) 참고로, 조종사의 경우 유사한 취지에서 자격인정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여 기량 등을 심사하고 불합격 시 자격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항공안전법」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한편, 안 제40조제1항제2호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함.

항공신체검사증명 제도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질병, 신체문제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 기준을 충족하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Personnel Licensing, 종사자격관리)에서도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음.

3. 국외운항항공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 ⑦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심사 또는 경험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 상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증명 】

원문	번역
4.4 Air traffic controller licence	4.4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4.4.1.4 Medical fitness. The applicant shall hold a current Class 3 Medical Assessment.	4.4.1.4 신체 적합성 신청자는 유효한 3급(Class 3)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다. 국토교통부 의견

국제기준에서는 자격증명 및 한정을 받은 자가 업무역량(competency)을 유지하고 최근 경험요건(recent experience)을 충족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한정증명에 대한 역량 및 경험요건을 정기훈련, 경험요건을 포함하는 기량심사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함.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과정을 규정하는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관제인력의 97%가 국토교통부 소속임을 고려할 때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함.

특히, 관제 기술·지식 훈련 특성상 반드시 실제 관제시설에서의 OJT훈련 및 지식 교육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부분의 교육훈련(60% 이상)을 직접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이며 안전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동의함.

4. 항공교통관제사 적성검사 신설 등(안 제42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적성검사(이하 “검사”라 함)를 받도록 하는 등 관제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적격 판정을 취소하도록 하되, 이를 취소하려는 경우 등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②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과 동시에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③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④검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시 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기관·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2조의2(항공교통관제사 적성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실기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현행	개정안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6의2.·6의3. (생략) 7. ~ 31.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를 관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직전 관제적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③ 관제적성검사의 적격 판정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의 취소 등) ① ----- ----- ----- ----- ----- ----- 제6호의4, 제6호의5-----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생략) 6의3. (생략) 6의4.·6의5. (현행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같음) 7. ~ 3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현행	개정안
④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u>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u>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u>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u>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 ⑤ (생략)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등”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	<u>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⑥ ----- ----- <u>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u>----- ----- ----- ----- ----- ----- ----- <u>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u> ----- -----.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 ----- -----.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제43조 제1항·제6항</u>-----.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제6항</u>-----.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기관에 내야 한다. 1. ~ 13. (생략) <신설> 14.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생략) <신설> 17. ~ 39. (생략) ② (생략)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수수료 등) ① ----- ----- ----- ----- ----- 제10항----- ----- -- 위탁받은 기관-----.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생략) 14. 제38조제4항----- ----- 15. 제38조제5항-----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7. ~ 3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제4호·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제5항·제6항(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34조제9호(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42조의2는 관제적성검사를 도입하고 있는데, 관제적성검사는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려는 사람이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하려는 것¹¹⁾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국,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선발과정에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임. 예를 들면, 유럽은 시험응시자가 항공교통관제사 업무에 적합한지 인지력 시험, 업무 예제 시험 및 개인별 성격 검사 등을 통해 적성을 검사하고 있고, 미국은 기억력 시험, 공간/시각 관계 시험, 개인별 성격 시험 등을 통해 적성을 판단하고 있음.

11) 참고로, 우리나라도 철도 관제의 경우 「철도안전법」에서 관제적성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철도안전법」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

【 해외 관제적성검사 사례 】

□ **유럽항공관제기구(Eurocontrol) : FEAST(The First European Air Traffic Controller Selection Test, 초기 항공교통관제사 선발시험)**

- (시험구성) 표준화된 방식의 시험으로서, 컴퓨터에 의해 채점되며 적성검사는 총 3단계 시험으로 구성

구분	내용	시험 목적
FEAST I	인지력 시험 및 영어능력 시험	문제해결, 논리추론, 시각인지, 주의집중, 멀티태스킹, 공간지각에 대한 기본 능력 측정
FEAST II	항공교통관제업무 예제 시험(2문제)	멀티태스킹 능력 측정
FEAST III	개인별 성격 문항시험	개인 성격 유형 검사 및 행동 경향 검사 * 정답과 오답이 없는 시험형태

□ **미연방항공청(FAA) : ATSA(The Air Traffic Skills Assessment Exam, 항공교통 능력 측정 시험)**

- (시험구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정해진 시간(2시간 49분) 동안 시험 응시

구분	내용	목적
SECTION 1	기억력 시험(8문제) - 2초마다 1개씩 숫자가 전시되며, 이전 숫자와의 차이 입력	기억력 측정
SECTION 2	심화 기억력 시험(10문제) -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방정식이 전 시, 각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 입력	복합 기억력 측정
SECTION 3	공간/시각 관계 시험(2문제) - 평면의 방향 및 관점별 방향 식별	공간 인식 기술 측정
SECTION 4	ATC 시뮬레이션 - 비행기 간 충돌여부 식별과 동시에 다수의 수학문제 풀이	우선순위 설정 능력 및 멀티태스킹 능력 측정
SECTION 5	명제 문제(15문제) - 주어진 명제를 보고 질문에 응답	독해능력 측정
SECTION 6	개인별 성격 시험(108문항) - 2문항씩 전시되며, 3가지 답 중 선택	개인 성격 유형 검사
SECTION 7	독해 문제(18문제) - 6개의 문단 전시, 문단 당 3개 질문	이해력, 추론능력 측정

다만, 개정안의 문언상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을뿐,

그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35조제5항은 관제적성검사 업무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존의 다른 위탁업무와 달리 그 업무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기관·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관제적성검사 업무 외에 기존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반대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비용 지원 근거가 필요한 경우 안 제42조의2(항공교통관제사 적성검사)에서 별도의 위탁근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²⁾.

다. 국토교통부 의견

관제적성검사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 취득자의 역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적합한 것으로 보임.

1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2(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5. 항공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자, 항공지도¹³⁾를 발간하는 자에 대한 감독(안 제132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로서 기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항공교통관리¹³⁾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항공정보¹⁴⁾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항공지도¹⁵⁾를 발간하는 자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장소에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항공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항공지도¹⁵⁾를 발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13)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14)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하 “항공정보”라 한다)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5)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공항, 관제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를 발간(發刊)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u> 5. ~ 7.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항공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85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자 및 항공지도를 발간하는 자</u> 5. ~ 7.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항공정</u>

현행	개정안
③ ~ ⑨ (생략)	<u>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항공지도를 발간을 위한 시설</u> ③ ~ ⑨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제4호·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제5항·제6항(관계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34조제9호(관계적성검사 적격 판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132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을 확대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법 제78조·제83조·제83조의2, 제89조제1항 및 제2항¹⁶⁾에 따른 때 항공교통관리업무

16)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은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중 일부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항공교통관리업무 수행, 항공정보 제공과 항공지도 발간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이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각 업무에 대해서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국방부장관

있다.

1. ~ 4.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④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기비행절차를 설정·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로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지정절차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공고절차·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수색·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하 “항공정보”라 한다)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공항, 관제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를 발간(發刊)하여야 한다.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위임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¹⁷⁾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기관으로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출입검사 대상 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항공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항공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항공지도 발간을 위한 시설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사무소,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사무소이거나 공항시설¹⁸⁾일 것임.

그러나 해당 장소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라는 점에서 별도 출입검사 근거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현행법 제1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¹⁹⁾에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입 및 수탁기관의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8)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공항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19)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따라 출입검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감독 대상 및 감독활동을 위한 출입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동의하나, 항공교통관제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자(공항공사 등)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자(공항공사, 사설 비행장 운영자 등)를 감독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